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개정 2012.6.29>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호					
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	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	
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()	
	주소			전화번호	
용도		채용시험 가점	가점비율	%	
제출처					
위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지 방 보 훈 청 장 보 훈 지 청 장 직인					
※ 유의사항					
1.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					
2.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되는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		
우	주소		전화	전송	
담당부서명:	과장:	주무:	담당자:	전자우편 주소:	